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병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5515

발의연월일: 2022. 5. 6.

발 의 자:김병기·김병욱·박성준

오영환 • 이정문 • 진성준

최기상 · 최인호 · 한준호

홍성국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여행업, 관광숙박업,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·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 시장·군수·구청장 등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령은 자본금의 의미나 산정방식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, 자본금이 자산총액에서 총부채를 제외한 금액을 의 미하는 실질자본금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초기 투자 상황에 따라 일 정부분 자본잠식이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 의 안정적인 사업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여행업 등의 등록기준 중 "자본금"을 법인인 경우에는 "납입자본금"을 의미하는 것으로, 개인인 경우에는 "등록된 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"을 의미하는 것으로 명시함으로써 법령해석의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(안 제4조제3항).

법률 제 호

관광진홍법 일부개정법률안

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 중 "자본금"을 "자본금(법인인 경우에 납입자본금을 말하며, 개인인 경우에 등록된 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)" 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등록) ①・② (생 략)	제4조(등록) ①・② (현행과 같
	<u></u> 이
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	3
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	
<u>자본금</u> ·시설 및 설비 등을 갖	자본금(법인인 경우에 납입자본
추어야 한다.	금을 말하며, 개인인 경우에 등
	록된 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의
	<u>평가액을 말한다)</u>
④・⑤ (생 략)	④·⑤ (현행과 같음)